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신 에이치티모바일 귀하
(경유)

제목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관련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
-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 우리 위원회에서 단말기 유통점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실조사 한 결과, 귀 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불임」 과 같이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불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2020. 6.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등기우편 송부). 끝.

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 임현주 행정사무관 임서우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김용일 이용지정채총괄과장 대결 2020. 6. 4. 반상권

협조자

시행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291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

전화번호 02-2110-1559 팩스번호 02-2110-0143 / 010005782@kcc.go.kr / 비공개(6)

국민이 주인인 정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과태료 부과, (2) 시정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	전화번호	010-8355-4244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6, 1층 115호(금곡동) (우편번호 : 1639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우리 위원회는 사실조사 기간('19. 9. 16. ~ 20. 1. 15.) 중 실시한 귀 사업장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p> <p>(1)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의 범위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p> <p style="margin-left: 20px;">- 귀 사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328건 확인되었음</p> <p>(2) 동시에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p style="margin-left: 20px;">- 귀 사는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p>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p>○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각 항목에 대한 처분내용</p> <p>(1) 최대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p> <p style="margin-left: 20px;">* 과태료 세부사항은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별표3 참조</p> <p>(2) 시정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견제출시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5. 법적근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각 항목에 대한 법적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3항

6. 의견제출	담당자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명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담당자	담당자	임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1559
	제출처	수신자	임 현 주	전화번호	02-2110-1559
	제출처	주소	(13809)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제출처	전자우편	limhj1214@korea.kr	모사전송	02-2110-0143
제출기한		2020년 6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4.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첨부 >

의견제출서			
1. 관련 근거(문서번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2020. .)		
2.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3. 의견제출 내용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관련 근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